

공주교도소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 공고

공주교도소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운전원)를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공주교도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등

고용형태	직종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운전	1명	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2. 담당예정 직무

- 교도작업생산품의 공용차량 상·하차 및 운전배송 업무
- 공용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등 제반 업무
- 교도작업제품에 대한 생산지원(보조)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보수 및 근무시간

- 보 수 : 기본급 월 2,155,880원(세전, 2026년 기준)
 - ※ 정액급식비(월160,000원), 명절상여금(기본급60%/연2회), 복리후생비(연500,000원), 근속수당(개인별 상이),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 ※ 중식시간은 8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퇴근시간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르며, 보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름

4. 응시자격

①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20627호, 2024.12.3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인사관리규정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응시하는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 및 지역 제한 없음, 단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26. 9월 중) 기준 바로 근무 가능한 자(채용유예 없음)

② 응시자격요건('A~C' 모두 충족)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기준)까지 충족]**

A. 1종대형운전면허 소지자	※1종대형견인차X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면허취소자, 면허정지자, 면허정지예정자 응시 불가
B. (직무관련 경력)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 소속되어 5톤이상 화물차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 규모별 세부기준 상 화물자동차 중 “대형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승용차X, 승합차X, 특수차X, 이륜차X ※군경력자의 경우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군운전면허X) 이후 군운전경력확인서상 ‘ 군용5톤 계열 ’, ‘ 군용10톤 ’, ‘ 군용

<u>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차량</u>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별표1] 군 자동차운전 경험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 기준 중 <u>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류 적용기준</u>(→ ‘군용5톤계열, 군용10톤, 군용기타’ 사항 참고) <u>(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별지 제1호 참고)</u>	기타’인 경우 인정함(자세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참고) ※ 경력(재직)증명서상 군 무기간, 담당업무, 차량명(종류), 차량톤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C. 최근(과거) 3년 이내 본인 과실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하는 경우 다시 발급하여 제출(재검중 실시, 별도 안내함)

③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채용 공고일(기준)까지 충족]**

- (직무관련 경력)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 소속되어 5톤이상 화물차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해당 운전경력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이상인 자
- ★ (예) ‘16년12월경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A회사에서 ‘17년3월부터 ‘20년 2월까지(만3년간) 제품 배송담당으로서 5.5톤 화물차를 운전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1년을 제외한 나머지 2년에 대하여 우대요건 경력인정
- 운전경력증명서상 모든 운전경력(운전면허) 전체기간 중 **교통법규위반 내용이 없는 자**(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건수(내용)별 감점처리)

④ 가점요건(사회형평가점)(해당자에 한함) **[채용 공고일(기준)까지 충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 단, 채용 후 운행하게 되는 차량은 5톤이상 화물차로서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장치가 장착(개조)된 차량이 아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이 4명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므로 본시험은 미적용

4.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서류 제출 여부, 응시요건 충족 여부 등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6명이상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명까지)를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5명)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응시자격 부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합한자를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응시인원이 6명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평가기준			비고	총점
일반분 야요소 (50%)	25점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심사위원 평가 - 매우우수 : 25점 - 우수 : 20점 - 보통 : 15점 - 미흡 : 10점 - 매우미흡 : 5점	1차 : 심사위원 별도 일반·전문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합산하고, 2차 : 1차에서 의가 합산 각 위원별 평 점을 다시 점 수를 합하여 가 높은 순 으로 합격자 결 정
	25점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능력 개발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전문 분야 요소 (50%)	30점	직무관련 경력 - 1년 미만 : 0점 - 1년 이상 : 10점 - 2년 이상 : 15점 - 3년 이상 : 20점 - 4년 이상 : 25점 - 5년 이상 : 30점(최대)	1년씩 연차별 차등우대	※③우대요건 및은 ④가점요건 적서류전형 에서만 적용
	20점	교통법규위반 내용 - 기본점수(20점)에서 모든 운전경력(운전면허) 전체 기간 중 건별(내용) 5점 감점(같은날 법규위반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각 1건씩으로 산정함)	-감점은 최대 20점까지만 감점처리하되, 단 운전경력 전체기간 안 사망사고, 음주운전, 횡단보도의 경우 수와 관계없이 대 감점 처리	
가점요소(3%)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가점요건 중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1개만 인정함)	만점의 3%(3점)가점, 단 중복가점 불가	

① 2차시험 : 면접시험(최종)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정요소) ①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근로자의 기본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이상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면접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평가 등급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를 합격자로 결정
 -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가점요건(장애인 등)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26. 7. 1.(수) ~ '26. 7. 13.(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6. 7. 9.(목) ~ '26. 7. 13.(월)	■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23.(목)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발표시 면접시험 장소, 시간 별도 안내
면접시험 (최종)	'26. 8. 10.(월)	■ 서류전형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6. 8. 26.(수)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발표 후 운전경력증명서(추가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등 제출
채용	'26. 9월 중	■ 운전경력증명서(추가 제출분), 일반채용신체검사서, 경력사항, 신원조사, 결격사유, 범죄경력, 복수국적, 기타사항 조회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안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6. 7. 9.(목) ~ 7. 13.(월)
-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32589) 충남 공주시 장기로 21-45, 공주교도소 총무과
→ 우편봉투 겉표지에 “공무직(운전원) 채용 응시원서 재증” 기재
 - **접수마감일 우체국 빠른등기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일반등기 불인정)
 - **방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7월 17일까지 응시자별 응시번호를 안내함(문자메시지 발송,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 문의사항 : 041-851-3204(총무과 채용담당)

7. 제출서류 및 안내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 제출서류 중 체크항목(복수국적여부 등), 서명(반드시 **자필서명** 및 **정자(바른 글씨)**로 기재), 생년월일 등 누락·오기하지 않도록 주의(누락·착오기재시 불이익 발생)

서류(각 1부)		작성(제출)방법 등 안내
공통·필수제	1. 제출서류 총괄표	★ 제출서류 공통사항 - 제출서류 중 서명은 자필서명(정자)이며, 체크항목(복수국적여부 등) 누락, 생년월일 등 착오기재 등에 주의 할 것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할 것

출 【 1 ~ 18 】		단, 경력증명서(재직X)의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하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아야 하고, <u>아래 13. 경력증명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u>
	2. 응시원서	-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13. 14. 15.)시에만 인정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 A4용지 1매이상 ~ 2매이내 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5.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2매이상 ~ 3매이내 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단, 매수 미충족시 불이익(불합격 등) 발생 가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8.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9.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0.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1. 공정채용 확인서	
	12. 주민등록 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 기재된 것
	13. 경력증명서 (우대요건 경력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13', '14', '15'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우대요건 경력 사항 동일)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B'에 제시된 직무관련 경력을 의미함 ※ <u>현재 근무(재직)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만 제출</u> (현재 근무(재직) 중인 사항 명확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퇴직 등으로 응시자격요건 경력을 불충족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또한 우대요건 경력 불충족으로 합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경력 사항 검증) ※ <u>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차량명, 차량톤수,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회사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하며</u> ,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자료 첨부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주당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근무인 경우 주당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 경력산정방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근무 : 경력 전부인정 • 시간제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인정 (예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근무 : 2년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위에서(↑) 요구되는 서식이 없을 경우 공고문 서식 제12호로 작성 제출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보완서류 : 4종 모두 제출(아래 8. 유의사항 참고)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사회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14.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우대요건 경력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개 - 경력 업체(기관)의 합병(통합) 등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상의 업체(기관)명이 불일치(불분명)한 경우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15. 소득금액증명서 (우대요건 경력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전체가 포함되도록 발급(발급자명(응시자), 사업자명(회사등)이 기재되도록 발급할 것) -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여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등 추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 (예1) A회사 '17년3월부터 '20년2월까지(만3년) 근무 → '17년도~'20년도분 발급 ○ / '20년도분만 발급 X (예2) B회사 '22년1월부터 '26년5월까지(만4년5개월) 근무 → '22년도~'25년도분을 발급하고 '26년도는 현재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으로 제출(단, '26년 근무기간 전체)
	16.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 공고일 이후 및 조회기간을 모두 '전체'(운전면허경력/교통사고/법규위반)로 하여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유의
	17. 1종대형운전면허증 사본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면허취소자, 면허정지자, 면허정지예정자 응시 불가
	18. 최종학력증명서	- 제척사유 등 확인용 - 심사위원회에는 제공하지 않음
해당자 제출	19.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해당 증명서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1개만 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아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예정직무, 공통요건,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점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합격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 후 재직 중인 경우라도 합격취소, 근로계약 해지 가능함).
- 최종합격자 발표(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일반채용신체검사, 비위면직여부(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여부(조회), 복수국적여부(조회) 등에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통지) 후 **운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최종시험(면접)일까지의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제출 기한내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응시자격요건 불충족(우대요건의**

교통법규위반내용 감점사항이 발생하여 최종합격에 영향이 있을 경우 포함)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1. ·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증명발급 상세안내 >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01 홈택스 로그인
공통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관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증명사업장증명

바로가기

- 자주찾는 메뉴
- 세금증명 서비스
- My 홈택스
- 홈택스안내
- 접기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별지 제2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8. 26. ~ 9. 3.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공주교도소 총무과(☎ 041-851-3204)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제1호>

2026년 제1회 공무원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공주교도소	공무원근로자(운전원)

■ 작성목록(총괄표) <공고문 7. '제출서류 및 안내' 필히 참고 후 제출>

목 록	제출여부(응시자 체크)
1. (필수) 응시원서 1부	☐ 제출 ☐ 미제출
2. (필수) 이력서 1부	☐ 제출 ☐ 미제출
3.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제출 ☐ 미제출
4.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5.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6.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필수)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제출 ☐ 미제출
8. (필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9. (필수)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0. (필수)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1.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	☐ 제출 ☐ 미제출
12. (필수) 경력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13. (필수)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4. (필수) 소득금액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15.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16. (필수) 1종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17. (필수)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18. (해당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해당 증명서 1부(중복으로 해당시 1개만 선택하여 제출)	☐ 제출 ☐ 미제출

※ ☐에 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자필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공주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공주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2026-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운전원)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예 ☐ (예시: 일 본) 아니오 ☐	
주 소	(☎)			
전자우편	(없는 경우 미기재)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2026-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날짜 기재하지 마십시오) 공주교도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 시험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및 응시표상 날짜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전자우편이 없는 경우 제외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예’ ☐안에 ☒체크 후, 옆 괄호 ()에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기관	공주교도소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운전원)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기준)까지 충족]

응시 자격 요건 자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1종대형운전면허		0000.00.00.		예시) 충청남도경찰청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	운행차량명	운행 차량톤수	근무 형태
	○○○○ (○○과)	‘16.01.01.~‘17.12.05. (휴직사항 별도 기재) [질병휴직] ‘16.05.01.~‘16.12.31.	사원	배송	현대자동차 파비스 카고	5.5톤	주40시간 주20시간
인적 피해 교통 사고 무(無) 경력	기간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최근(과거) 3년)		증명자료		발급일자		비고
	예시) 최종시험(면접)예정일이 ‘26.08.31.인 경우(면접일을 포함하여 과거 3년으로 산정) ‘23.09.01.~‘26.08.31. (기간 직접 기재할 것)		운전경력증명서		‘00.00.00.		※해당 기간에 본인 과실 에 의한 인적 피해 교통 사고가 있는 경우 응시 할 수 없음

※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에 5톤이상 화물차 운행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최근(과거) 3년간 본인 과실에 의한 인적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기재하고 경력이 여러 개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

3. 우대요건 [채용 공고일(기준)까지 충족]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	운행차량명	운행 차량톤수	근무 형태
	○○○○ (○○과)	'16.01.01.~'17.12.05. (휴직경력시 기재할 것) [질병휴직] '16.05.01.~'16.12.31.	사원	배송	현대자동차 파비스 카고	5.5톤	주40시간 주20시간
교통 법규 위반 경력	기간 (공고일 기준 과거 모든 운전 경력(면허) 전체 기간)		증명자료	발급일자	법규위반 경력	비고	
	예시) 2종소형운전면허 취득일이 '19.01.01.이고 공고일이 '26.06.30.인 경우 '19.01.01.~'26.06.30. (기간 직접 기재할 것)		운전경력증명서	'00.00.00.	0건 1건	※해당 기간에 교통법규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건수를 기재(없는 경우 0건 기재)	

※ 경력이 여러 개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

※ 같은날 교통법규위반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각 1건씩으로 산정함

4. 가점요건 [채용 공고일(기준)까지 충족]

구분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	------------------------------	-------------------------------	--------------------------------	---------------------------------	--------------------------------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가점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자필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1매이상~2매이내)

☐ 응시기관 : 공주교도소	☐ 응시분야 : 공무원근로자(운전원)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원동기, 생활신조나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1)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2) 기재 내용이 없거나(간략하거나) 특정 문자만 반복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불성실 기재로 불이익(감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자필서명)	

【작성요령】 (작성시 작성요령 삭제)

- ① 양식 변경 불가(자필로 작성 또는 컴퓨터 타이핑 작성)
- ② A4용지 **1매이상~2매이내** 분량 작성(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서식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2매이상~3매이내)

☐ 응시기관 : 공주교도소	☐ 응시분야 : 공무원근로자(운전원)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수행의지, 직무수행방향, 그간 경력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유의사항1)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2) 기재 내용이 없거나(간략하거나) 특정 문자만 반복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불성실 기재로 불이익(감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자필서명)	

【작성요령】 (작성시 작성요령 삭제)

- ① 양식 변경 불가(자필로 작성 또는 컴퓨터 타이핑 작성)
- ② A4용지 2매이상~3매이내 분량 작성(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주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원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경력, 자격증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자필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 제8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채용시험 실시기관	채용분야
		공주교도소	공무직근로자(운전원)

목 록	해당여부('V' 체크)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자필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 제9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응 시 자

(자필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 제10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채용기관에서 작성함)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작성)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자필서명)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12호>

경력증명서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000	생년월일	. . .	성별	남	
	주소	0000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명 차량톤수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비고
	'00.00.00 ~ '00.00.00 ※질병휴직: '00.00.00. ~'00.00.00.	(주) 00	예시) 사원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현대자동차 파비스 카고 5.5톤	예시) 주40시간 주20시간	휴직사항 있음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인) 발급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 * 위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시 발급기관 서식으로 제출 가능
- *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발급기관 담당자가 작성**
- * **휴직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필히 기재
- * **담당업무 내용, 차량명, 톤수, 근무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발급기관(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직인, 서명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별표 1] 군 자동차운전 경험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 기준

□ 군 일반차량 운전경험자의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장비명	대 상 차 량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해당 군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원 동 기	특 수					
								구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육군	해군	공군
승용 또는 승합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 적용	10인이하			●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15인이하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16인이상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	특수 (구난)소형	-	-	
화물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 적용(냉동탑차, 방송 ● 워셔 ● 청소차, 이 동PX, 통신가설, 고 소작업차량, 제설, 살 수, 하수도준설차, 유 도무기시험 ● 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 8톤 (HD-8C), 9톤(KB940), 9톤 그랜토, 항공기 착륙차량)	4톤이하			●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5톤이상 11.5톤 미만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	특수 (구난)소형	-	-
	11.5톤 이상 화물차량	11.5톤 이상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소방차	인명 ● 항공기구조 및 경화화소방차 포함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견인차	트랙터 전차종								●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 (대형견인)
구난차	렉카 전차종							●			특수구난	특수(구난)	특수구난
덤프차	5톤 이상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유조차	3,000리터 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3,000리터 초과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구급차	13인승 이상 구급차	13인승이상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2인승 이하 구급차	12인이하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이륜차	이륜자동차	125cc이하					●				2륜차량	2륜차량	2륜차량
	이륜자동차(MC)	125cc이상			●						2륜차량	2륜차량	2륜차량

□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차량명	대 상 차 량	승차 정원 적재 중량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해당 군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특수			육군	해군	공군
							구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군용 1/4톤	K-1XX 계열	5~6인승			●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	특수 (견인)소형	-	-
	K-15X 계열	4~8인승			●					중형차량	-	2종보통
	K-115구급차	5~6인승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군용 3/4톤	산악작전차량				●					소형차량	-	-
	K-3XX 계열	2~4.5톤			●					중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	특수 (견인)소형	-	-
	K-35X 계열	4~8인승			●					중형차량	-	2종보통
군용 계열	K-312구급차	10인승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XX 계열	4톤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	특수 (견인)소형	-	-
	K-511(병력수송) # 하단 열영 함조	18~20인승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3 유조차량 계열	3000ℓ 초과위험물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514 사이트 컨이버스	24인승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05mm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		●					●	● 중형차량 ● 특수견인 소형	● 보통차량 ● 특수견인	● 1종보통 ● 특수견인
	KM9 제독차			●						중형차량	-	1종보통
군용 계열	K-7XX 계열	8~10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	특수 (견인)소형	-	-
		총중량 3.5톤 초과 트레일러						●		특수견인	-	-
	K-711(병력수송) # 하단 열영 함조	20~24인승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2 구난차량	8~10톤		●			●			● 대형차량 ● 특수구난	● 대형차량 ● 특수구난	● 1종대형 ● 특수구난
	K-713 덤프차량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5 견인차량							●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대형견인
	K-719 리본부교차량	19.3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05mm자주식곡사포 K105A1자주포	18.2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레이더견인차	총중량 3.5톤 초과 견인		●				●		● 대형차량 ● 특수견인	● 대형차량 ● 특수견인	-
군용 10톤	K10 제독차			●						대형차량	-	1종보통
	K-8XX 계열	12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912 구난차량		●				●			● 대형차량 ● 특수구난	● 대형차량 ● 특수구난	● 1종대형 ● 특수구난
	K-915 견인차량		●					●		● 대형차량 ● 특수견인	● 대형차량 ● 특수견인	● 1종대형 ● 특수대형견인
	M-98x 탄약운반차		●							대형차량	-	-
	M-98x 구난차량		●				●			● 대형차량 ● 특수구난	-	-
	K-239 탄약 운반차	30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신형비치매트 차량	26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

군용 기타	K806, K808 K870/877, K30W 자율형장갑차		●						대형차량	-	-
	KM3 자주도하장비		●						대형차량	-	-
	다목적 특수무장차		●						대형차량	-	-
	RS, LS 패트리엇 차량	15톤	●						-	-	1종대형
	GMT 패트리엇 차량	750kg 초과 견인	●				●		-	-	● 1종대형 ● 특수대형견인
	ECS 패트리엇 차량	7톤		●					-	-	1종보통
	RPT 패트리엇 차량	750kg 초과 견인		●			●		-	-	● 1종보통 ● 특수대형견인
	K-916, 917, 918 천궁 차량		●						-	-	1종대형
	SPL, ML계열	32톤	●						대형차량	-	-
	LT, MSQ계열	32톤	●						대형차량	-	-
	MRAP	12.6톤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한국형 PLS		●						대형차량	-	-

※ 항공기 견인·정비, 지상조업 장비, 활주로 정비를 위한 장비(차량)는 제외

※ 군용 BV206 K-53X계열은 레도차량으로서 운전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
(군용 2t 차량 중 K-5XX 계열과 혼동에 유의)

※ K-511, K-711의 제1종 대형면허 적용은 **군운전경력확인서에 병력수송 경력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경력이 **2천km이상**인 자에 한함. 병력수송 경력이 아닌 일반
경력인 경우 K-5XX 계열 또는 K-7XX 계열을 적용

※ 해군 해병대수송직위 및 통신차량운전병의 경우 취득한 군 운전면허에 맞춰 적용
(육군 면허 취득자는 육군으로 적용, 해군 면허 취득자는 해군으로 적용)

★ □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
준 → 군용5톤계열, 군용10톤, 군용기타 중 1종대형에 “●” 표시된 차
량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1. 운전면허증 발급 -> 2.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3. 군면허 교환발급으로 확인

<별지 제2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공주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